

의안번호	2219918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7.27.
추계번호	26E35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380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1,101억원(연평균 36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11조의3제1항)	-380	-367	-354	-1,101	-36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1조의3제1항 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)	○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(LPG Butane)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11조의3제1항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등의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시행일 및 연장된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2027~2031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LPG부탄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/kg을 감면하는 제도임
 - '감면'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택시운송사업자가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LPG부탄을 구매하면 신용카드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기납부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방식으로 운영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423억원, 2025년 408억원(전망) 등으로 나타남

[표 2]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	2026(전망)
조세지출 실적	473	461	438	423	408	421
개별소비세	412	401	380	368	355	366
교육세	62	60	57	55	53	55

자료: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방법

- 향후 추계기간 동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2023~2025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 감소율(-3.5%)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380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1,101억원(연평균 36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7~2031년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958억원(연평균 319억원), 교육세 143억원(연평균 48억원) 감소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11조의3제1항)	-380	-367	-354	-1,101	-367
개별소비세	-331	-319	-308	-958	-319
교육세	-49	-48	-46	-143	-4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